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06호
2. 발 의 자 : 박상혁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6일
4.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II.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방안이 모색되고,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으로 유아교육 체계 전반의 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유아교육이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3조).
2.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3.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4.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5. 교직원의 연수·교육과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6.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7.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8.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4. 10. 23. ~ 10. 27.)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박상혁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06호로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유아교육의 운영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유아교육은 사회 발전과 한 개인의 전인적 성장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적자원 투자 중 효과성이 상당히 높은 교육활동입니다.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¹⁾는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이 한 아이의 인생에서 건강, 영양, 학습적 성취, 사회·정서적 발달 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언급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²⁾ 역시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유아교육 분야 투자를 장려해왔습니다.
- 더욱이 유아교육 진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유아교육 투자의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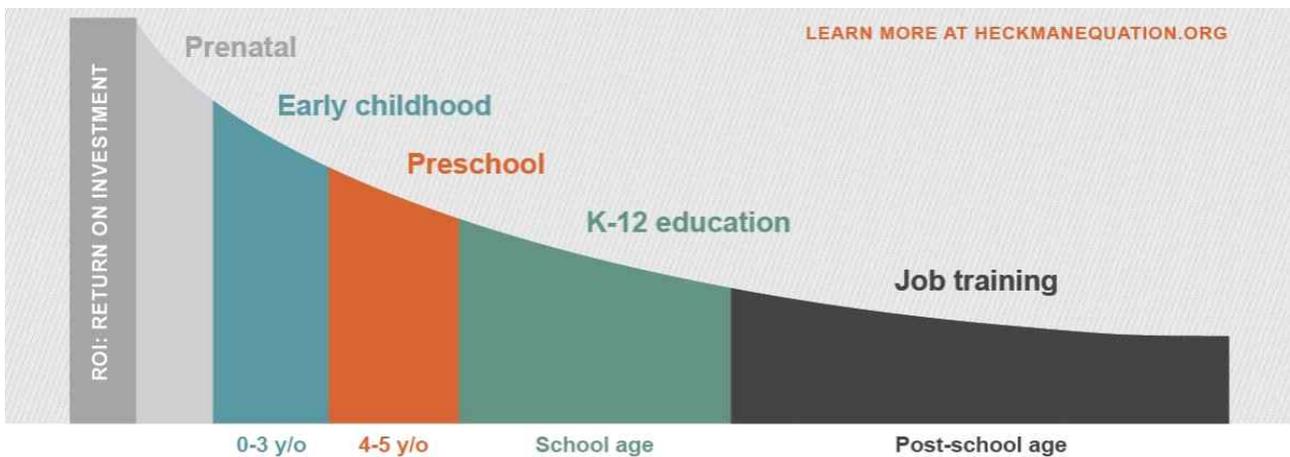
1) UNESCO(2024.9.17.), What you need to know about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https://www.unesco.org/en/early-childhood-education/need-know?hub=70242> (검색일 2024-12-06)

2) OEC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ecec.html> (검색일 2024-12-06)

수익률을 주장한 헤크먼 곡선(The Heckman Curve)이나³⁾ 미국 질병통제센터,⁴⁾ 유럽 연합의 CARE 프로젝트 연구팀⁵⁾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들은 공통으로 유아기의 교육이 다른 연령대의 교육 투자에 비해 투자 효과가 크고, 아동의 발달과 건강, 사회적 성취 등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1] 헤크먼 곡선(The Heckman Curve)⁶⁾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과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유아교육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3) 헤크먼 곡선(The Heckman Curve)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효과는 연령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생애 초반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라는 이론임. (자료 : Heckman Equation, The Heckman Curve, <https://heckmanequation.org/resource/the-heckman-curve/> (검색일 2024-12-06))

4)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조절 기술과 인지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산모의 취업과 소득 증가, 고등학교 졸업률 증가, 아동 학대의 감소,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한 사회적 수입 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힌바있음.

(자료 : <https://archive.cdc.gov/www.cdc.gov/policy/hi5/earlychildhoodeducation/index.html>)

5) CARE(Curriculum and Quality Analysis and Impact Review of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재정적 지원 아래 유럽 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 전반을 분석한 뒤 유아교육의 질적 체고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되었음. 해당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협조 아래 유럽 각국의 11개 대학 연구팀이 참여하여 시행되었음.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표된 연구인 「유아교육과 돌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A REVIEW OF RESEARCH ON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ON CHILD DEVELOPMENT, 2016)」에 따르면, 유아기의 고품질의 유아교육, 보육이 제공된다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아동의 더 나은 학업 성과와 사회적 기술 등을 통해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며, 아동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림.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ecec-care.org/> 을 참조할 수 있음.

6) Heckman Equation, Economy impact of investing in early childhood learning <https://heckmanequation.org/resource/the-heckman-curve/> (검색일 2024-12-06)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를 통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교육비 지원 확대를 비롯한 시책을 추진 중이고,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를 근거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방과후과정 내실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의 유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유치원의 설립과 폐지, 교육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을 총괄하며, 2024년 기준 5,552억 8백만 원의 예산을 누리과정 운영과 교원 인사관리, 사립유치원 지원 등에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표-1] 2024년 유아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⁷⁾

(단위: 천원, %, '24.9.30.기준)

세부사업	최종 예산	주요 사업 내용
유보통합운영지원	216,900	• 유보통합 추진
유보통합운영 (특별교부금)	1,519,000	•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및 특색사업 운영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
교원연수운영	258,200	• 유치원 원장 등의 자격 연수
교원인사관리	8,280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교육전문직(유아) 선발, 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 등
교육비지원	326,280	•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누리과정지원	478,926,162	•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외국국적 유아학비,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등 포함)
사립유치원지원	60,964,766	•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단기대체교사 및 학급운영비 지원 •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처음학교로) 사용 지원 등
유아교육운영	5,086,687	•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유아교육 홍보 및 관계자 연수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유아교육정보시스템(처음학교로) 운영 • 유치원 유아모집 지원 등

7)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본청 주요업무보고 자료(2023.11.) 및 2024년도 예산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세부사업	최종 예산	주요 사업 내용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9,617,775	•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운영, 공립에듀케어 신증설 등
현장중심장학지원	20,050	• 유아수석교사제 운영 등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따라 종전 유아교육에서 어린이 집의 영유아보육 업무까지 관장 사무가 확대될 것인바, 유아교육이 향후 서울교육에서 차지할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유아교육과 관련해 제정·시행 중인 조례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⁸⁾ 자치입법의 관점에서 해당 사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유아교육과 관련한 자치입법 활동이 다소 저조하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동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 및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조례상 규정하여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유아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정부 정책 기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적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제4조에서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사립유치원 지원,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운영, 교직원 연수, 보호자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10조와 제11조에서 각각 유치원 평가와 유보통합, 제12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가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제1항은 교육감이 유아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같은조 제2항은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따른 보호자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은 교육감이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유아가 유아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은 「유아교육법」 제3조가⁹⁾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유아교육법」 등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맞춰 하위규범인 조례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안 제2조제3항은 사회적 취약계층 유아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다루고 있는바, 제정 취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아교육의 투자 효과가 한 아이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교육과정에 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9)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인성교육·안전교육 등의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¹⁰⁾ 등에 의해 공포·시행한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의¹¹⁾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유아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6조제2항은 안전과 보건, 장애 이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등 유아 대상 필수 교육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표-2] 2024년 기준 유아 대상 필수 교육 현황¹²⁾

번호	내용	시수	근거
1	생활안전교육	13시간/학기당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21호)
	교통안전교육	10시간/학기당 3회 이상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8시간/학기당 2회 이상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10시간/학기당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	6시간/학기당 2회 이상	
	직업안전교육	2시간/학기당 1회 이상	
	응급처치교육	2시간/학기당 1회 이상	
2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제31조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10)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11)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4-1호, 2024.1.30.)

12)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2024.1.), 「2024 서울 유아교육 계획」, 243쪽.

번호	내용	시수	근거
		(연간 6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4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학기당 2시간 이상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29조)
5	장애이해 교육	연 2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6	다문화 이해교육	연 2시간 이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 2022학년도 다문화교육 기본 계획

4) 유보통합에 관한 검토(안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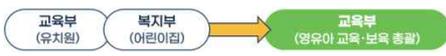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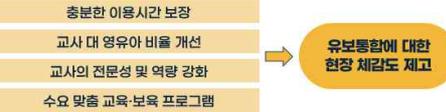
○ 안 제11조는 교육감이 유보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발생하는 교육과정과 임금, 시설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보통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유보통합은 정부가 유치원(유아교육기관)과 어린이집(영유아 보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및 관련 행정체계의 총체적 개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구현하겠다는 사업으로, 2026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교원 공동연수와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돌봄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2024년 9월부터 관내 7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영유아 보육 사무를 이관받을 예정에 있습니다.¹³⁾

13)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4년 유보통합 추진 현황은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이 제출한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24번, 2024.10.7. 제출)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그림-2] 유보통합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¹⁴⁾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p>유보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24.6.)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6.)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약 150여교)  5세 유아교육바보육료 추가(월 5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기준 확정안 발표('24.12월) 지방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24.12월)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문은 교육감이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의 추진과 유치원-어린이집 간 통합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적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¹⁵⁾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송여정(2180-8265)
----------	----------------	-------	----------------------------------

14) 교육부 보도자료(2024.11.18.),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로 -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쪽.

15)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

관계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19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② 삭제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229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 1의2. 제17조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의 수립
2. 유치원의 설립·운영
3. 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4. 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5. 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6. 그 밖에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